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2] <신설 2023. 6. 7.>

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·보관·보고 및 제출 기준(제8조의2제1항 관련)

1.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·보관 사항과 기록시기 및 보관기간

기록·보관 사항	기록시기	보관기간
가.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	매월 종료 후 3개월 이내	다음 각 목의 시점 중 더 늦은 시점까지 가. 승무원이 75세가 되는 시점 나. 마지막 운항일부터 30년이 되는 시점
나.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	조치할 때마다	
다.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	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마다	
라.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교육 결과	실시할 때마다	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5년

2.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

보고사항	보고기한
가.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	매 분기 종료 후 3개월 이내. 다만,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영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.
나.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	매 분기 종료 후 3개월 이내. 다만,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영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영 제10조제4호가목에 따른 경위 조사 및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재평가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.
다.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	건강진단을 실시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
라.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교육 결과	교육을 실시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

3.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폐업 시 제출기록과 제출기한

제출기록	제출기한
제1호에 따른 보관자료 일체	폐업 예정일 15일 전